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윤종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2. 3. 15.
발 의 자 : 윤종호, 김상조, 김성현
김수민, 김태근, 박세진
윤영철, 이수태

1. 제안이유

의장·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
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확립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장·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시 당선자 결정기준 변경(안 제8조제3항)

○ 연장자 → 최다선의의원(최다선의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順)

나.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(안 제8조제5항)

○ 발표시간 : 5분 이내

○ 선거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희망하는 직책을 명시한
정견발표 신청서 제출

○ 정견발표는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름

다. 선거 당일 정견발표 외 질의·토론 등 일체의 발언 금지 및
정견발표 시 타 의원 지지·비방 발언 금지(안 제8조제6항)

3. 개정 규칙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연장자”를 “최다선의원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선거 전일 18시까지 희망하는 직책을 명시한 정견발표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정견발표는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한다.
- ⑥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5항의 정견발표 외에 질의·토론 등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,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·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· ② (생략)	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<u>연장자</u> 를 당선자로 한다.	③ ----- <u>최다선의원</u> , <u>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</u>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⑤ <u>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선거 전일 18시까지 희망하는 직책을 명시한 정견발표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정견발표는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한다.</u>
<u><신설></u>	⑥ <u>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5항의 정견발표 외에 질의·토론 등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,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·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 제71조(회의규칙)

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